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3.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46호로 2015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 시설 보육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한 종합적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

(안 3장 제목,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3조1항,

안 제14조제1항부터 4항까지, 안15조, 안 제16조, 안 제31조제3호)

나.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개정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을 추가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상담·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안 제13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중복되어 영유아플라자 관련 조항을 삭제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 영유아보육법 시행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제정 :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가정양육지원 기능이 추가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등 기존의 시설보육지원 위주에서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종합적 보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었음.

-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과 중복되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 및 기능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일시보육 서비스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관 련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 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1.8.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3.6.4.]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6.4.]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 육아 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教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3.12.4.]

■ 『2014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3년도	2014년도
IX.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p.95)	○자치구 영유아플라자 삭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통합 ○주요 사업<추가> - 우리동네 보육만장 사업 - 아이조아 ~ 서울 맞춤 컨설팅 - 어린이집 업무간소화 교육 - 재능기부 통한 특별활동 어린이집 연계 - 지역사회 네트워크 어린이집 시범운영 - 시간제 보육실 운영(확대)